

의안번호	2207271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01.21.
추계번호	25C0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며,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에 포함된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12항)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실시 장소, 감독관 파견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항)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항)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은 그 임용권자에게 5년간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서의 필기시험의 포함 여부

및 교육감에게의 위탁 여부를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면서, 복수의 학교법인이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장소·감독관 파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하고,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되,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¹⁾
- 개정안은 이 때의 필기시험 포함 여부 및 위탁 여부를 임용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시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교육감에게 장소·감독관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개전형 공동실시에의 협조 등으로 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 채용인원·시험실시 횟수 및 공동실시 여부 등과 이에 따른 교사장운영비·인건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포함된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시험횟수 및 채용인원, 출제과목 등과 시·도교육감의 시험 위탁실시에 따른 재정소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곤란함
- 또한, 복수의 학교법인이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통하여 공개전형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요청될 경우 공개전형 실시 장소 제공 및 감독관 파견 등에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공개전형 공동실시 여부 및 채용인원 등과 공개전형 방식 등을 현시점에서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음²⁾

1)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에 시·도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법 개정 전(2020~2021년) 전북지역에서는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주관으로 법인간 공동전형을 실시하고, 이에 교육청이 출제위원회 운영비, 통합교사장 운영비 등으로 1억

- 이에 동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9,5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